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. 8. 27 선고 2021가단620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7. 9.

판 결 선 고 2021. 8. 2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지분에 관하여 2010. 2. 4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.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8. 4. 27. 접수 제189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C는 1994. 10. 13. 주식회사 D(이후 '주식회사 E'으로 상호변경)으로부터 1,000만 원을 변제기 1997. 10. 7., 이율 13.5%, 지연배상금율 연 18.5%로 정하여 대출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대출금채권'이라고 한다).

나.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2. 4.경 주식회사 E에서 F 유한회사로, 2003. 2.경 G은행으로, 2011. 7.경 원고로 순차적으로 양도되었다.

다. 원고는 2012. 8.경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227581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. 11. 21. 위 법원으로부터 'C는 원고에게 17,156,233원 및 그 중 2,230,863원에 대하여 2012. 3. 30.부터 2012. 11. 16.까지는 연 19.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다. 한편, 피고는 C와 남매사이로, 2018. 4. 27. 피고와 C의 부 H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0. 2. 4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

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/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2010. 2. 4.자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

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.

3. 판단

피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인바,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.

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인 대출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.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제기인 1997. 10. 7.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(피고가 주장하는 2002. 3. 30.경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). 따라서 원고가 양수받았다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.

이에 대해 원고는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227581호 양수금청구의 소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, 소를 제기한 2012. 5. 14.경은 이미 이행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.

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숙희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. 대전광역시 동구 [도로명주소] 대전광역시 동구

위치상

연와조 및 세면벽돌조스라브층평

가건주택

건평 67.04㎡

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하실

건평 8.10㎡

세면벽돌조스라브층가건 변소

창고

건평 3.0㎡

세면벽돌조스라브층가건

변소

건평 1.0㎡

2. 대전광역시 동구

대 135.8㎡

(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관할 소유)

-이 상-

